

# 법원 민원 처리 내규 일부개정내규안

## 1. 개정이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3459호, 2015. 8. 11. 일부개정)」(이하 “법”이라 한다)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6980호, 2016. 2. 12. 전부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각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제5조제1항을 법 제8조의 내용으로 반영(안 제5조제1항).
- 제5조제2항을 시행령 제5조의 내용으로 반영(안 제5조제2항).

## 3. 법원 민원 처리 내규 일부개정내규안

붙임과 같음

##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 법원 민원 처리 내규 일부개정내규안

법원 민원 처리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민원사항의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이나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를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은 구술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로 한다.

제5조제2항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우편, 전신,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를 “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팩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즉시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내규는 시행 당시에 각급기관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민원의 신청)</p> <p>① <u>민원사항의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이나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u></p> <p>② <u>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우편, 전신,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u></p>	<p>제5조(민원의 신청)</p> <p>① <u>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은 구술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u></p> <p>② <u>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팩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u></p>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 종합민원과	
연락처	(02) 3480 - 1143